201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문화재청 소관)

2017. 2.

문화재청

목 차

1.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문화재청】

1. 문화유산 모바일 앱은 젊은 감각과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제작하고, 앱 개발 시 기획 단계부터 활용성·중복성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무분별한 앱 개발로 인한 예산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할 것 ····· 1
2. 증도가자 훼손과 관련한 감사를 내부인사 위주로 실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바, 향후 유사 감사를 실시할 경우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감사제도를 개선할 것 ····· 1
3. 「전쟁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헤이그 국제협약 가입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문화재 훼손 시 복원이 가능하도록 복원용 실측도 제작을 추진하는 한편, 무형문화재 장인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 ····· 1
4. 문화재청의 내부청렴도 평가가 3년 연속 최하위이므로 실효성 있는 부패 방지제도와 보다 높은 제재조치를 마련할 것 ····· 2
5. 세종시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개관에 대비하여 관람객을 유인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 2
6. 전국 지자체 문화재담당 공무원의 문화재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20명(1. 2%)에 불과한 바, 일선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 ····· 3
7.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책임을 지자체에 맡기는 경우, 각 지자체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문화재 관리 인력과 예산의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3
8. 죽방 등 선조들이 다양하게 사용해왔던 해양문화와 관련한 지혜들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노력과 방안을 강구할 것 ····· 3
9. 승무, 살풀이, 태평무 등 전통무용분야 3개 종목에 대한 무형문화재 인정 조사 관련 민원이 많으므로, 전승자・관계전문가 등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 ····· 4

10.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고령화 및 전승자 부재로 인하여 전승 단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4
11.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 등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4
12.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을 통해 무형문화재의 근본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4
13. 전수교육관 건립 예산 편성 시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전수교육관 건립이후에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4
14. 전수교육관 시설에서 일반인 대상 사회교육 사업을 강화하고, 단일 종목의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보다는 다수 종목이 입주하는 종합전수교육관 우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4
15. 군부대 내 문화재 관리담당자(민사작전담당관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 5
16. 육의전박물관 등 발굴 후 이전보존 조치 된 유적의 관리 및 관리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전보존 조치 목적을 훼손한 자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방안을 검토할 것 ····· 5
17. 중도 적석총에 대한 현상변경 전에 문화재청에서 부분완료 승인을 한 이유와 강원도에서 섬을 팔 때 파헤쳐진 문화재가 방치되지 않도록 레고랜드 출토문화재에 대한 종합보존대책을 마련할 것 ····· 5
18. 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지자체 신청이 없어도 문화재청장 직권으로 문화재 지정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중도 레고랜드 주차장 예정 부지에서 조사된 지석묘의 새로운 보존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중도에 대해 문화재청의 직권조사 계획을 수립할 것 ····· 5
19. 중도 레고랜드 유적의 현장보존이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없으므로 더 나은 시설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적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유적 이전보존 방안을 검토할 것 ····· 6
20. 인골이나 미라 관련 유품은 문화재로 잘 보존관리하고 있으나, 고고학이라는 학문의 본질인 인류문화사를 탐구하는데 미라를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관리개선 방안 마련과 입법적인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 6
21. 2012년~2016년 기간 중 발굴조사기관 미수금은 66억 6천만원에 달하는데, 이와 같이 과도한 미수금의 발생은 부실 발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발굴조사기관이 그 비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 ····· 6

22. 발굴조사 모니터링 용역을 전문성을 가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조사하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 7
23.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의 관리 실태가 심각하므로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 조사결과 그 이행을 강화할 수 있는 별도의 합의서 마련을 추진할 것 ····· 7
24. 발굴과정에서 출토되어 임시보관 중인 국가귀속문화재의 분실 및 훼손 방지를 위해 인력보강과 관리체계 및 처벌규정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7
25. 지진대비 문화재 대응 매뉴얼 보완 및 상황 발생 시 상황실 운영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업그레이드된 지진대비 문화재 보호정책을 추진할 것 ····· 7
26. 문화재청의 안전 매뉴얼 검토 결과, 문화재 특성이나 재해 유형에 따른 상황별 대안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 8
27. 문화재청의 존폐를 걸고 훈민정음상주본 반환을 위하여 노력할 것 ····· 8
28. 중요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률이 64%로 저조하므로 화재보험 가입을 위해 노력할 것 ····· 8
29. CCTV 수리기간이 평균 약 5~7일 소요되는데, 20일 이상 수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예산투입을 통해 신속히 개선할 것 ····· 9
30. 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 사적 등 문화재 532건에 설치된 CCTV(3,549개) 중 45%가 저화소(41만)이고 국보·보물의 경우에도 저화소 비율이 43%로 야간 식별이 안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성능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9
31. CCTV에 범인이 포착되더라도 30일 이후에 도난사실을 알게 된다면 무용지물인 셈이므로, 문화재 도난 사실을 제때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9
32. 개인, 사립학교 및 재단 등이 보유하고 있는 사유 국보와 보물에 대한 지진 등 재난재해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9
33. 문화재 전기시설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 대상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고,「문화재보호법」에 전기설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 차원의 제도 마련을 검토할 것 ····· 10
34.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중 소방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10
35. 문화재 감정건수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문화재 감정위원 증원 및 처우개선과 감정관실 확대 설치 방안을 마련할 것 ····· 11
36. 문화재 도난방지, 화재 대응 등에 IOT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1
37. 국가지정 목조문화재에 비치된 소화기(분말, 청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 11

38. 남한산성 아래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통과 되므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처 바라며 고속도로 건설 관련 계획을 제출 할 것 ····· 11
39.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약속한 세계유산센터 관리인력 21명이 충원되지 않고, 현재 1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인력 충원계획을 보고할 것 ····· 12
40. 현재 문화재 돌봄사업의 인력이 적으므로 더 많은 인력 증원 방안을 마련할 것 ····· 12
41. 문화재 복원과정에서 기존의 현판을 떼어낸 후 前 대통령 친필 현판으로 교체한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12
42. 문화재 주변 공사와 관련한 진동으로 문화재 피해발생이 예상되므로 진동 허용기준을 문화재 관련 법령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2
43.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검토 시 현장에 대한 이해도 및 허가율이 떨어지므로 서면검토를 지양하고 현지조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12
44. 평창 동계올림픽 배후도시인 강릉, 평창, 정선, 영월 등을 연계한 관동팔경 거점 유적과 강원도의 자연유산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탐방루트 등)과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 13
45. 백제역사유적지구도 신라왕경 복원과 같이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을 투입하여 제대로 된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 ····· 13
46. 반구대암각화 카이네틱댐 실시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행해진 정치적 행정이므로 더 이상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할 것 ····· 14
47. 반구대 암각화 보존은 수위조절만이 유일한 대안이며 절수형 양변기를 사용하는 것이 환경을 지키면서 사업기간도 짧고 효과적이므로 울산시와 함께 검토할 것 ····· 14
48. 반구대암각화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문체부와 문화재청은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 ····· 14
49. 국정감사 후 상임위 차원에서 반구대암각화 관련 전문가, 울산시장, 문화재청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것 ····· 14
50. 국외문화재가 환수된 이후의 관리가 부실하여 85%가 수장고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4
51. 대학박물관의 국보·보물 동산문화재 관리가 부실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5
52. 홍천 물걸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선(보물 제542호)의 하대석 한쪽 부분이 2003년 발견되어 춘천박물관에서 보관중이며 나머지 하대석은 외부에 방치되어 훼손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5

53. 훈민정음해례본 간송본의 앞 두장은 오류가 많으므로 국보지정을 해제 하거나 오류 부분 재복원 방안을 강구할 것 ····· 15
54. 정밀실측이 완료되지 않은 석조문화재 및 목조문화재에 대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 15
55. 첨성대 하단 관상용 잔디가 첨성대 훼손을 가속화시키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첨성대 외에도 석조문화재 주변 잔디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16
56. 삼척 홍전리사지 출토 '청동정병'의 문화재적 지정가치를 검토할 것 ····· 16
57. 대구 경상감영의 역사적,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사적 지정을 검토할 것 ····· 16
58. 평창올림픽을 전·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오대산사고 전시관에 조선왕조실록 진본을 전시할 것 ····· 16
59.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화재 특별점검 결과에 따른 E, F등급은 보수를 완료하고 D등급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 ····· 17
60. 문화재 수리에 사용하는 목재는 K-wood 인증을 획득한 목재를 사용할 것 ····· 17
61.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직접 함수율을 측정할 수 있도록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를 확보할 것 ····· 17
62. 숭례문 단청 소재 개발과정에 단청장인 및 기술자 등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청 소재 개발 이후 숭례문 재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일정·목표 등)을 마련할 것 ····· 17
63. 문화재수리 불법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18
64.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역할을 분명히 하여 민간 문화재 수리업계와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만드는 방안을 마련할 것 ····· 18
65. 현재 문화재수리 직종에 대한 노임단가 조사업무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문화재수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노임단가 조사업무를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9
66.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수행 및 자문위원회 운영은 정치적 접근이 아닌 전문적인 문화재행정 차원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 ····· 19
67. 신라왕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발굴 조사와 철저한 고증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고 월성발굴 조사의 중장기계획을 보고할 것 ····· 19
68. 신라왕경사업 현장 모니터링 점검자 및「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참여자 선정에 보다 엄격한 자격 요건과 사전검증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20

69.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사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최대한 동원하고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할 것 ····· 20
70. 경주 월성 마스터플랜 수립시 전문가 및 문화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철저한 고증을 통해 제대로 된 발굴, 복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할 것 ····· 20
71.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신라왕경 지구에 대한 발굴 등 개발사업이 유네스코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문화재청이 책임 있게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 21
72. 지역문화재 발전 및 활용도 제고와 지역문화의 국민 향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을 확대할 것 ····· 21
73. 경복궁 주·야간 CCTV 화질이 41만화소이어서 200만화소의 CCTV와 선명도 차이가 있으므로 좀 더 높은 화소의 CCTV로 교체할 것 ····· 21
74. 현재 카페로 사용하고 있는 창덕궁 빈청의 복원에 고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복원이 가능하므로 이를 복원할 것 ····· 22
75.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해 종묘 주변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뚜렷한 기준을 마련할 것 ····· 22
76. 조선왕릉 내 다목적 산불방제 차량이 소방 활동 보다는 경내 경상관리와 출장업무로 인한 사용 빈도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22
77. 4대궁에서 개관일에 농약을 살포해 관람객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4대궁을 포함하여 문화재 전반에 걸쳐 농약 살포 현황을 조사하고 휴무일에만 안전관리를 준수해 농약을 살포하도록 조치할 것 ····· 22
78. 「문화재청은 화성 태안 3지구의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건설교통부 등과 어떤 협력을 할 것인지와 매장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을 보고할 것 ····· 23
79. 국외 독립운동유적지가 905개 있는 바, 국가보훈처 소관이라고 배제하지 말고 국외 독립운동 유적지가 문화재보호법상의 국외 문화재 개념에 포함되도록 개정안을 마련할 것 ····· 23
80. 명성왕후를 시해한 일본검(히젠도)이 일본 쿠시다 신사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23
81. 문정왕후어보가 3년이 지나도록 환수가 지지부진 하므로 정부차원의 적극적 방안을 마련할 것 ····· 23
82. 중요민속문화재 174곳 중 10%가 빈집으로 있어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24

83. 통영 소반장 추용호 공방 강제철거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이 직접 나서서 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것 ····· 24
84. 「한글 1. 0패키지」 등록문화재 등록 말소 사유와 향후 계획을 제출할 것 ····· 24
85. 소실·훼손의 우려가 큰 우리의 근대 문학 서적에 대하여 등록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것 ··· 24
86. 50년이 경과하지 않은 현대문화유산도 등록문화재 개념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예비문화재 제도'를 검토할 것 ····· 25
87. 일본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강제징용 사실을 적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 ····· 25
88.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시행의 법률적 근거가 아직 없으므로 유네스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의 취지에 따른 국내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것 ····· 25

【소속기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89. 대학원의 교수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문화재청은 대학교가 발전될 수 있도록 대학원 전임교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26

< 국립문화재연구소 >

90. 증도가자 훼손과 관련하여 유물 조사·분석을 위한 매뉴얼 마련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26
91. 부석사 관세음보살좌상의 보관에 문제가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27
92. 경주 지진피해 조사 시 첨성대에 직접 사다리를 걸치고 조사한 것은 부적절 하므로 현장 조사 실시방법을 개선할 것 ····· 27
93. 최근 취약한 안전방재 연구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건축문화재안정성평가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27

< 국립고궁박물관 >

94. 89%이상의 조선왕실 유물이 한번도 전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장고 개방 확대 및 홈페이지 활용 등 방안을 마련할 것 ····· 27
95. 왕실유물 특성상 다양한 재료들을 혼합하여 만들다 보니 다른 유물 복원작업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8

< 국립무형유산원 >

96. 전승공예품의 해외 문화원 대여 후 제대로 관리·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 ····· 28
97. 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대전·대구·세종에는 실적이 없으므로 지방에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28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 한국문화재재단 >

98. 미르재단과의 업무협약(한국의집 취선관 내 페랑디-미르 요리학교 운영 관련)은 한국문화재재단의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며, 법인 설립 후 실적이 전무하고, 설립 및 운영취지의 진정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미르재단과의 업무협약 취소를 검토할 것 ····· 29
99. 한국의집 주요사업에 대한 감사기관의 철저한 감사 및 식음료・공연부문의 지속적인 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29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100.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이후 4년 동안 환수실적이 6건 8점으로 저조하므로 국외재단 임무 중 환수에 보다 중점을 두고, 환수대상 문화재 목록을 정리하여 계획적으로 환수를 추진할 것 ····· 29
101. 원활한 환수 작업을 위해 국외 문화재 보존·복원 및 홍보 사업을 적극 활용할 것 ····· 29

1.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문화재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 문화유산 모바일 앱은 젊은 감각과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제작하고, 앱 개발 시 기획 단계부터 활용성·중복성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무분별한 앱 개발로 인한 예산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할 것	**<조치사항>** ○ 행정자치부 '공공앱 정비 및 관리 강화' 기준 준수 및 청내 앱 신규 개발 시 활용성·중복성 등 사전 검토 강화를 통한 무분별한 앱 개발 제한('16년~) ○ 모바일 앱 신규 개발 시 모바일 최신 트렌드 반영 유도('16년~)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 발생하는 신규 수요는 문화재청 '통합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수용('17년~)
2. 증도가자 훼손과 관련한 감사를 내부인사 위주로 실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바, 향후 유사 감사를 실시할 경우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감사제도를 개선할 것	**<조치사항>** ○ 증도가자 훼손 관련 감사 시 외부전문가 2명(보존처리 전공 1명, 부식학 전공 1명) 참여 **<향후 추진계획>** ○ 유사감사에 대한 감사 계획 수립 시 관련 분야 외부 전문 인력 과반 수 참여
3. 「전쟁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헤이그 국제협약 가입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문화재 훼손 시 복원이 가능하도록 복원용 실측도 제작을 추진하는 한편, 무형문화재 장인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	**[국제협약 가입 조치 강구]** **<조치사항>** ○ 외교부 주관회의 참석(헤이그협약 가입 및 이행법률 제정 추진현황 등 논의,12.19) ○ 외교부 업무협의(헤이그협약 가입 및 이행법률 제정 추진현황 등 논의,1.10) **<향후 추진계획> .** ○ 무력충돌시문화재보호를위한협약 이행법률안 발의 형식 검토(3분기) ○ 이행법률안 국회심의절차진행(4분기) **[복원용 실측도 제작]** □ 목조·석조 국보·보물 <조치사항> ○ 정밀실측 추진 관련 협조 요청('16..10.12/문화재청→지자체) ○ 2017년도 정밀실측 예산 신청 및 예산 교부('16.11월~17.1월) ※ 석조문화재 98건, 목조문화재 1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매년 70건 목표로 2021년 까지 완료 ※ 단,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예산반영 정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조치사항>** □ 사적 ○ 사적 실측 현황 정밀 조사 : '16.9~10월 - 실측 대상 310건 중 208건 완료 (67% 완료) ※ 실측 대상 : 사적 495건 중 실측이 필요 없는 매장문화재(요지, 패총 등) 185건 제외 **<향후 추진계획>** ○ 미실측 사적 연차별 실측 계속 추진 - '17년 계획 : 진도 남도진성 등 4건(860백만원) - '17년 이후 : 매년 10여건 실측, '27년 완료 예정 **[무형문화재 보호방안]** **<향후 추진계획>** ○ 무형문화재 보호방안 마련('17. 3월) - 무형문화재 보유자(장인) 및 관할 시군구 연락체계 구축, 안전보호처 사전 확보 조치
4. 문화재청의 내부청렴도 평가가 3년 연속 최하위이므로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제도와 보다 높은 제재조치를 마련할 것	**<조치사항>** ○ 청렴도 개선 방안 마련 회의('16. 12. 13. / '17. 2. 7.) - 청렴도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 강구 ○ 청렴도 개선 계획 수립 중 **<향후 추진계획>** ○ 청렴도 개선 계획 수립 및 적극 추진(2월~)
5. 세종시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개관에 대비하여 관람객을 유인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디지털문화유산 영상관 전시 기본계획 및 공간구성 연구' 용역('16년)을 통해 콘텐츠 구축방안 마련 - 전시 프로그램 및 전시 콘텐츠 구축계획 수립 등 **<향후 추진계획>** ○ '디지털문화유산 영상관 전시 기본계획 및 공간구성 연구' 용역에 따라 영상관('24년 개관예정)의 전시 콘텐츠 구성 및 전시프로그램 개발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6. 전국 지자체 문화재담당 공무원의 문화재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20명(1. 2%)에 불과한바, 일선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문화재 관리는 행정·수리복원기술·문화재의 전문성과 관리역량이 상호 복합되어 보존·관리되는 특성 - 행정(관리역량), 수리복원 기술(공사감독), 문화재 지정(전문지식) ○ 문화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이외에 기술직·학예직·전문경력관 등 전문인력이 현장에서 지속 활동 - 광역 155명(367명 중 42%)/ 기초 422명(1,214명 중 35%) **<향후 추진계획>** ○ 전통문화교육원에 문화재관리 실무 및 전문교육과정 지속 운영 ○ 지자체 문화재담당 학습모임 '문화재정책포럼' 지속 지원 ○ 문화재 돌봄사업 확대 및 돌봄단체 전문자격증 소지자 채용 확대로 지자체 공무원 역량 보완 * '16년 돌봄단체 내 수리기능자 등 전문인력 125명
7.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책임을 지자체에 맡기는 경우, 각 지자체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문화재 관리 인력과 예산의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소유자 관리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지자체 등 관리함(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 소유자 불분명, 소유자 관리능력 부족, 국유문화재 중 국가의 직접 관리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나 관리단체 지정관리 **<향후 추진계획>** ○ 지자체에 관리여건 개선 권고 - 관리대상 문화재의 증가 등에 따른 문화재 관리 인력·예산의 적정한 확보 방안 지속 권고 ○ 문화재 돌봄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업무와의 유기적 연계 및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여력 증대 * '16년 돌봄단체 관리 국가지정문화재 1,179건 및 관리인력 대폭 증원
8. 죽방 등 선조들이 다양하게 사용해 왔던 해양문화와 관련한 지혜들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노력과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 '제주 해녀' 인류무형유산 등재('16.12) ○ '해녀문화' 국가지정 가치조사('16.8~12) **<향후 추진계획>** ○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추진('17년 상반기) * 무형문화재 범위 확대에 따라 향후 10년간 기초조사 실시 (어로, 생활관습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9. 승무, 살풀이, 태평무 등 전통무용 분야 3개 종목에 대한 무형문화재 인정 조사 관련 민원이 많으므로, 전승자·관계전문가 등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청장-태평무비대위 1차 면담 실시('16.3.9) ○ 무용분야 보유자 인정방식 제도개선 토론회('16.7.7) ○ 청장-태평무비대위 2차 면담 실시('16.12.12) ○ 무형문화재과-태평무보존회 면담 실시('17.1.17) **<향후 추진계획>** ○ 무형문화재 전승자 인정 조사 방식 등 제도 개선 ('17년도)
10.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고령화 및 전승자 부재로 인하여 전승 단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매년 전승자 충원계획 수립·공고 시 전승자 부재종목 우선 반영('15~'16) **<향후 추진계획>** ○ 무형문화재 전승자 충원 관련 제도개선 ('17년도) - 고령의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제도 운영 개선 - 무형문화재 전승자 인정조사 방식 개선
11.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 등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전승지원금 집행지침' 마련 및 설명회 개최('15.12월) ○ 보유단체 월정전승지원금 집행 실태 자체점검 실시('16.8월) ○ 전승지원금 집행지침' 이행 정도 등에 따라 우수 보유단체 선정 지원 ('16.11월) **<향후 추진계획>** ○ 보유단체 전승지원금 집행 실태 점검 정례화 (매년 1회)
12.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을 통해 무형문화재의 근본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16. 1~9월) ○ 기본계획 수립 보고('16.12월) ○ 관보 고시 ('17.1월)
13. 전수교육관 건립 예산 편성 시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전수교육관 건립 이후에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2017년도 건립지원 예산 심사절차 개선('16.3월) - 예산 규모, 입지여건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무화, 심사시 외부위원 확대 ○ 전수교육관 활용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16.3~11월)
14. 전수교육관 시설에서 일반인 대상 사회교육 사업을 강화하고, 단일 종목의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보다는 다수 종목이 입주하는 종합전수교육관 우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2017년도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지원('17.2월초) **<향후 추진계획>** ○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심사 기준 정비('17.3월) - 지방문화재 입주시 복수 종목 우선 지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5. 군부대 내 문화재 관리담당자(민사작전담당관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제10회 군 문화재 관리 교육 ('16.11.23.~11.25.) - 문화재 관계 법령 및 군부대 내 문화재 보존관리 실무 교육 - 교육 시간 확대(6시간→9시간) - 교육 주제에 부합하는 현장교육 **<향후 추진계획>** ○ 실무 중심 교육 확대 예정('17.11월)
16. 육의전박물관 등 발굴 후 이전보존 조치 된 유적의 관리 및 관리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전보존 조치 목적을 훼손한 자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 이전보존 조치 유적을 훼손한 자에 대한 규제는 현행법령상 가능 **<향후 추진계획>** ○ 보존조치유적관리비 지원 근거 등 마련 예정('17년 상반기)
17. 중도 적석총에 대한 현상변경 전에 문화재청에서 부분완료 승인을 한 이유와 강원도에서 섬을 팔 때 파헤쳐진 문화재가 방치되지 않도록 레고랜드 출토문화재에 대한 종합 보존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부분완료는 발굴조사가 완료된 테마파크부지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근거하여 조치('16.7.12) - '중도 적석총(도 기념물19호)' 현상변경심의와 별개사안임 ○ 중도유적 동절기 발굴중단 및 보존대책 조치('16.12.13) **<향후 추진계획>** ○ 발굴완료 조치시 유적보존방안 제출('17년 상반기 예정) ○ 강원도 등 유관기관과 협의,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중도 유적의 장·단기 보존방안 계획 수립('17.3월 예정)
18. 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지자체 신청이 없어도 문화재청장 직권으로 문화재 지정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중도 레고랜드 주차장 예정 부지에서 조사된 지석묘의 새로운 보존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중도에 대해 문화재청의 직권조사 계획을 수립할 것	**[문화재 지정 관련]** **<조치사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안 제35조제2항 신설) - 입법예고 : '17.1.10.~2.20. * (개정내용) 등록문화재의 직권 등록 및 등록 절차 진행 근거 마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문화재로 보존 및 활용 등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조사 및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향후 추진계획>**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17.4월 이후 -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 '17.2월중 -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17.2~3월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중도레고랜드 관련] <조치사항> ○ 문화재청 직권에 의한 문화재지정을 확대하여 더 많은 문화재가 보존 활용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 주차장 예정부지 출토 지석묘의 현지보존조치 지시(′16.12.19) ○ 상중도의 학술조사를 관계기관과 협의, 긍정적으로 검토 - 청장 중도유적 방문 시(′16.10.10) 학술조사 지시 등 <향후 추진계획> ○ 문화재청 직권에 의한 문화재지정 방안 추진(′17년 상반기) ○ 주차장 설계변경 및 현지보존 추진과정 확인(′17년 상반기) ○ 상중도 학술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17년 상반기)
19. 중도 레고랜드 유적의 현장보존이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없으므로 더 나은 시설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적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유적 이전보존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 연구 및 교육자료로 가치가 높은 유구는 이전보존토록 행정조치 완료(′14.9.29, ′16.4.4) <향후 추진계획> ○ 유적공원 조성 및 유적전시관 등 이전보존조치된 유구가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진행과정 검토 및 관리주체 지정(′17년 하반기)
20. 인골이나 미라 관련 유품은 문화재로 잘 보존관리하고 있으나, 고고학이라는 학문의 본질인 인류문화사를 탐구하는데 미라를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관리개선 방안 마련과 입법적인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조치사항> ○ 매장문화재법 개정안 발의(조승래의원 대표발의 등, ‘16.8.22) -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미라 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보존에 관한사항 ○ 매장문화재법 개정안 교문위 소위 상정(‘16.11.22) <향후 추진계획> ○ 매장문화재법 개정안 국회심의 및 하위법령 마련(‘17년 하반기)
21. 2012년~2016년 기간 중 발굴조사기관 미수금은 66억 6천만원에 달하는데, 이와 같이 과도한 미수금의 발생은 부실 발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발굴조사기관이 그 비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	<조치사항> ○ 조사비용 미수금 예방을 위한 협조 공문 발송(′17.1.11) - 요청기관 : 각 조사기관,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 - 협조사항 내용 ·협회 : 협회에서 제정한「매장문화재조사 표준도급계약 규칙」을 회원기관에 적극 홍보 ·조사기관 : 매장문화재조사 계약 시 용역대금지급 보증(보증서 교부 등) 협조 <향후 추진계획> ○ 중·장기적으로 발굴절차 개선 등 제도개선 추진(‘17-’18) - 필요시 법령개정, 규정 제정 등 제도개선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2. 발굴조사 모니터링 용역을 전문성을 가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조사하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조사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국립문화재연구소 인력을 전문가로 위촉('16년 하반기) **<향후 추진계획>** ○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참여시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모니터링 사업 추진('17년)
23.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의 관리 실태가 심각하므로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 조사결과 그 이행을 강화할 수 있는 별도의 합의서 마련을 추진할 것	**<조치사항>** ○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 모니터링 조사 실시 ('16.11.16~12.20) **<향후 추진계획>** ○ 문화재보호분과회의 시 안내판 설치 및 미군 자체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방안 협의 예정('17.4월)
24. 발굴과정에서 출토되어 임시보관 중인 국가귀속문화재의 분실 및 훼손 방지를 위해 인력보강과 관리체계 및 처벌규정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현황 실태조사 실시 - 조사기간 : '16.10.14.(금)~12.6.(화) / 54일간 - 조사대상 : 중앙문화재연구원 등 19개 기관 - 조사내용 : '14~'15년도 국가귀속 및 이관계획 대비 이행상황 점검, 임시보관 문화재의 보관관리시설 및 현황 조사 등 - 조사결과 : 국가귀속, 유물이관 실적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상승 ・국가귀속 : ('15년도) 32.6% → ('16년도) 42.4%(9.8% 상승) ・유물이관 : ('15년도) 65.2% → ('16년도) 69.2%(4.0% 상승) ※ 참고(연도별 분실 및 훼손현황) - ('12년) 10건, 24점, ('13년) 21건, 66점, ('14년) 8건, 13점, ('15년) 3건, 6점, ('16년) 3건, 7점 * 실태점검 등 노력의 결과로 2015년 이후부터는 분실, 훼손 건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관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실태조사 시 전문인력 운용현황 등에 대한 점검 포함 예정 ('17.10월) ○ 국가귀속문화재 관련규정 개정('17.4월) : 국가귀속문화재 분실 및 훼손에 따른 책임 소재 명확화, 보관관리 효율화 등
25. 지진대비 문화재 대응 매뉴얼 보완 및 상황 발생 시 상황실 운영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업그레이드된 지진대비 문화재 보호정책을 추진할 것	**<조치사항>** ○ 지진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6.11.28.) ○ 문화재분야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16.12.27.) - 매뉴얼 개선, 문화재 지진방재 R&D추진, 교육실시 등 ○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 확보('16.12.) ※ 총인원 9명 (신규인원 4명 증원, 기존인원 5명 재배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ㅇ 문화재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선 ('17.2월) - 보고·전파체계 개선, 상황실 운영 기준 강화 등 ㅇ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17.2월) ㅇ 문화재분야 지진방재시행계획 작성을 통한 과제 관리
26. 문화재청의 안전 매뉴얼 검토 결과, 문화재 특성이나 재해 유형에 따른 상황별 대안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산불, 풍수해, 지진 매뉴얼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 ('16.12.) ㅇ 계절별 위험요인을 고려한 문화재안전대책 수립·시행(분기별 1회) ※ 봄철, 가을철 : 산불 / 여름철 : 풍수해 등 **<향후 추진계획>** ㅇ 풍수해, 지진, 산불 등 매뉴얼 개선안 마련 ('17.3월까지) - 보고·전파체계 개선, 상황실 운영 기준 강화 등
27. 문화재청의 존폐를 걸고 훈민정음 상주본 반환을 위하여 노력할 것	**<조치사항>** ㅇ 2015년도 9차례 / 2016년도 4차례 면담 실시, 한 달에 2번 이상 전화 설득 - 상주본 회수를 위해 소지자를 면담, 설득하였으나 공개 거부 ㅇ 소유권 확정을 위한 "승계집행문" 부여 받음('16.12.14, 상주지원) : 강제집행 가능 ㅇ 훈민정음 해례본 인도 요청 공문 발송('17.1.5) **<향후 추진계획>** ㅇ 지속적인 공개 및 반환 설득 ㅇ 인도요청 문서 발송(3회 이상/5월까지) ㅇ 강제 집행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 검토, 추진('17.5월 이후)
28. 중요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률이 64%로 저조하므로 화재보험 가입을 위해 노력할 것	**<조치사항>** ㅇ 중요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현황('16.9월) - 국·공유(54건) : 100% 가입 / 사유(125건) : 약 26.4% 가입 ㅇ 문화재 방재 담당 실무자 회의 실시('16.9월) - 문화재 화재보험 가입 현황 및 문제점 등 의견 수렴 *** 개인 소유 문화재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에 대한 신중검토 필요** *** 현재 문화재에 특화된 보험상품이 없고 보험상품 개발에도 부정적** **<향후 추진계획>** ㅇ 한국화재보험협회 업무협의 추진('17.4~6월) - 문화재 맞춤형 화재보험 개발 가능성 여부 검토 ㅇ 지자체 연계 문화재 소유자 대상 화재보험 가입홍보('17년 연중)

<table>
<tr><th>시정 및 처리요구사항</th><th>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th></tr>
<tr><td>29. CCTV 수리기간이 평균 약 5~7일 소요되는데, 20일 이상 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예산투입을 통해 신속히 개선할 것</td><td><조치사항>
ㅇ 방재시설 유지관리 예산 지원('16)
- 지적된 CCTV 수리 완료(문경 봉암사, 3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ㅇ CCTV설비 등 안전관련 장비의 고장시 긴급예산을 투입하여 신속한 수리 실시('17년 연중)
ㅇ CCTV 설비 등의 방재설비 유지관리용역 예산지원을 통한 지자체의 일상적 관리 독려('17/3,296백만원)</td></tr>
<tr><td>30. 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 사적 등 문화재 532건에 설치된 CCTV(3,549개) 중 45%가 저화소(41만)이고 국보·보물의 경우에도 저화소 비율이 43%로 야간 식별이 안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성능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td><td><조치사항>
ㅇ '12년 이전 설치 41만 화소 이하 CCTV 우선 교체
- 내용연수(9년) 도래 순으로 개선사업 중
<table><tr><td rowspan="2">합 계</td><td colspan="3">화소수 별 설치수량('16.8월 기준)</td></tr><tr><td>41만</td><td>200만</td><td>400만</td></tr><tr><td>3,669(100%)</td><td>2,069(56.4%)</td><td>1,600(43.6%)</td><td>20(0.5%)</td></tr></table>
<향후 추진계획>
ㅇ 2017년도 방범설비 설치 및 개선사업 지침 개정('17.2월)
- CCTV 화소수 200만소 이상 및 비상조명 설치
ㅇ 현재 설치된 성능이 약한 CCTV 점진적 교체 추진</td></tr>
<tr><td>31. CCTV에 범인이 포착되더라도 30일 이후에 도난사실을 알게 된다면 무용지물인 셈이므로, 문화재 도난사실을 제때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td><td><조치사항>
ㅇ 문화재청 미신고된 도난문화재 현황제출 요청('16.5.18,시·도) : 확인 결과 미신고된 문화재 없음

<향후 추진계획>
ㅇ 문화재 소유자 스스로 관리 강화 및 도난 발생 시 즉시 보고토록 협조문서 시달(3월중)
ㅇ 문화재 안전경비원 순찰 강화
ㅇ 야간식별 가능한 CCTV로 점진적 교체 추진</td></tr>
<tr><td>32. 개인, 사립학교 및 재단 등이 보유하고 있는 사유 국보와 보물에 대한 지진 등 재난재해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td><td><조치사항>
ㅇ 문화재분야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16.12.27.)
ㅇ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지속실시('16년 연중)
ㅇ 동산문화재를 다량 소장하고 있는 목조건물에 대한 노후전기시설 교체 사업 실시('16년)
※ 국보·보물 동산문화재 소장처 전기설비 현황조사 및 안전대책 마련 연구용역('15년)

<향후 추진계획>
ㅇ 국보·보물 동산문화재 소장처 노후전기설비 지속 교체
ㅇ 정기조사결과 개인 보관이 어려운 경우 국·공립박물관 위탁보관 방법 등 권유('17년 연중)
ㅇ 문화재 소유자·관리자에 대한 교육실시 및 전시기법 등 배포('17년 하반기)</td></tr>
</table>

<table>
<tr><th>시정 및 처리요구사항</th><th>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th></tr>
<tr><td>33. 문화재 전기시설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 대상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고,「문화재보호법」에 전기설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 차원의 제도 마련을 검토할 것</td><td><조치사항>
○ 문화재 전기설비 부적합 현황(연도별)
<table><tr><td>구분</td><td>2013</td><td>2014</td><td>2015</td></tr><tr><td>부적합</td><td>40</td><td>61</td><td>87</td></tr><tr><td>조치여부</td><td>40</td><td>61</td><td>87</td></tr></table>- 전기설비 부적합 미조치 대상 긴급보수 지원(2개소, ‘16.11월)
* 포항 오동리 근대한옥 및 포항 용계정 덕동숲(‘17.1월 완료)
○ (사)한국전기공사협회와 MOU 체결(‘16.8.26)
-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등 2건 피뢰설비 설치
○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16년도 긴급보수비 지원(’16.10월)
- 영주 흑석사 등 3건 410백만원(국비 100%)

<향후 추진계획>
○ 문화재 전기안전점검 및 긴급조치 실시(’17. 연중)
- 전문가(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한 합동점검 실시
- 결과에 따라 긴급보수비·유지관리비 등 차등 지원
○ 지침 개선을 위한 전문가 TF 구성·운영(‘17년 연중)
- 문화재 전기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td></tr>
<tr><td>34.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중 소방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td><td><조치사항>
○ 안전경비원 소방자격증 소지 현황
<table><tr><td>구분</td><td>2014</td><td>2015</td><td>2016</td></tr><tr><td>총인원</td><td>415</td><td>427</td><td>458</td></tr><tr><td>소지자</td><td>168</td><td>228</td><td>329</td></tr><tr><td>비율(%)</td><td>40.6</td><td>53.4</td><td>72</td></tr></table>○ 자격증 소지자 채용비율 증가 지자체 우대조항 포함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지침 개선·시달(‘16.11.4)
○ 전문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예산 확보(‘16.12월)
- 전년대비 2배 확보(‘16년 40백만원 → ’17년 8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 안전경비원 대상 전문역량 강화 교육 실시(2회)
○ 안전경비원 근무실태 모니터링 실시(‘17년 상·하반기)
- 문제점 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 자격증 소지자 채용독려 및 전문교육 강화 문서 시행
○ 장기적으로, 자격증 보유자에 한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검토(일률적 적용에 따른 문제점 분석)</td></tr>
</table>

<table>
<tr><th>시정 및 처리요구사항</th><th>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th></tr>
<tr><td>35. 문화재 감정건수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문화재 감정위원 증원 및 처우개선과 감정관실 확대 설치 방안을 마련할 것</td><td><조치사항>
ㅇ 감정위원 증원 관련 행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
- 증10명 : 인천공항(7명), 인천우체국(1), 김포공항(1), 제주공항(1)

<향후 추진계획>
ㅇ 감정위원 증원 관련 행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지속 추진
ㅇ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감정관실사무실 설치 추진('17.12월)</td></tr>
<tr><td>36. 문화재 도난방지, 화재 대응 등에 IOT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td><td><조치사항>
ㅇ 문화재 방재 앱 시범 도입 및 운영('16)
- 비상신고, 방재설비 관리, 순찰이력 관리 등
ㅇ 문화재현장 IoT 기술 적용을 위한 전문가 사전협의('16.10.19)
- 문화재 가치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 시범운영 필요

<향후 추진계획>
ㅇ 문화재 방재 앱 전국 확대 추진('17년도 하반기)
ㅇ 문화재 현장 IoT 기술 도입 전문가 TF 구성·운영('17년 연중)
- 방범취약 문화재 대상 IoT 기술 도입 시범도입 검토</td></tr>
<tr><td>37. 국가지정 목조문화재에 비치된 소화기(분말, 청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td><td><조치사항>
ㅇ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소화기 현황('16년 10월 기준)
<table><tr><th>구분</th><th>건 수</th><th>분말소화기</th><th>청정소화기</th><th>하론 및 이산화탄소</th></tr><tr><td>합 계</td><td>520</td><td>81,78</td><td>2,087</td><td>463</td></tr><tr><td>국보·보물</td><td>148</td><td>1,660</td><td>743</td><td>214</td></tr><tr><td>중 민</td><td>182</td><td>2,764</td><td>560</td><td>48</td></tr><tr><td>사 적</td><td>190</td><td>3,754</td><td>784</td><td>201</td></tr></table>* 배치기준(실내 : 분말 + 청정소화기, 실외 : 분말소화기)

<향후 추진계획>
ㅇ 문화재 재난방지시설(소화기 등) 현황 조사 완료(2월 중)
ㅇ 조사결과 노후화된 소화기 교체 및 미배치된 곳에 배치토록 문서 시행(3월 중)
ㅇ 현지조사 등을 통한 점검 및 지속적 노후화된 소화기 교체 추진</td></tr>
<tr><td>38. 남한산성 아래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통과 되므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처 바라며 고속도로 건설 관련 계획을 제출 할 것</td><td><조치사항>
ㅇ 사업계획 의원실 설명('16. 10. 6, 김병욱 의원)
-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계획(도로공사)에 대한 검토 계획, 진동관리계획 등
ㅇ '16.12월, 문화재위원회 심의, 조건부 허가(발파시 진동모니터링 결과를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에 통보)

<향후 추진계획>
ㅇ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모니터링 수집결과 협의(수시)</td></tr>
</table>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39.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약속한 세계유산센터 관리인력 21명이 충원되지 않고, 현재 1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인력 충원계획을 보고할 것	**<조치사항>** ○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신설('16. 11. 1) ○ 관리인력 충원(11명→30명, 조치완료)
40. 현재 문화재 돌봄사업의 인력이 적으므로 더 많은 인력 증원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2017년부터 중요민속문화재 관리사업인 '전통가옥 보수사업'과 돌봄사업을 통합, 관리인력(약 167명)을 흡수함으로써 돌봄사업 인력 증원 * '16 돌봄상시인력 570명+전통가옥관리인력 167명=737명 **<향후 추진계획>** ○ 자격증 소지자 채용 의무화 및 처우개선을 통해 전문인력 지속적 확보
41. 문화재 복원과정에서 기존의 현판을 떼어낸 후 前 대통령 친필 현판으로 교체한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친필현판은 기존에 있는 현판을 떼어내고 설치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 복원·정비 사업으로 새로 건축된 건물의 규모와 기능에 맞게 설치한 것으로 파악됨.
42. 문화재 주변 공사와 관련한 진동으로 문화재 피해발생이 예상되므로 진동 허용기준을 문화재 관련 법령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 문화재주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진동, 소음, 악취 등 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용역예산 확보/1억) - 관계 연구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 등) 자료 수집('17.1월) **<향후 추진계획>** ○ '17.2월 연구용역계획 수립/ '17.3월 발주 / '17.10월 완료 ○ '17. 11~12 진동, 소음 등 위해요소 허용기준(안)마련
43.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검토 시 현장에 대한 이해도 및 허가율이 떨어지므로 서면검토를 지양하고 현지조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계획 수립('17.1월, 재조정 대상 선정) *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으로 허가율 제고 ○ 건축행위 등 행정처리기준 연구 용역완료(경미한 현상변경행위 지침 개정 추진) * 건축 등의 허가신청 내용을 구분하여 경미한 행위로 고시, 허가단계 이전 지자체에서 자체 처리 확대, 허가율 제고효과 **<향후 추진계획>**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규제 합리화) 추진 - '17.12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재조정' 214건 목표 - '17.5월, "경미한 현상변경행위 지침" 등 행정처리 기준 개정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44. 평창 동계올림픽 배후도시인 강릉, 평창, 정선, 영월 등을 연계한 관동팔경 거점 유적과 강원도의 자연유산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탐방루트 등)과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하여 '강릉대도호부 관아터' 원형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아터 강릉우체국 철거를 완료('16.6월)하고 '17년 우체국 부지 등을 발굴할 계획임. ○ 단종의 유배지로 알려진 '영월부 관아'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16.3.8)하였으며 장릉(사적 제196), 청령포(명승 제50)와 함께 역사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임. ○ 또한 올림픽 배후도시인 강릉, 평창, 정선, 영월 등 올림픽 배후도시를 연계한 관동팔경 거점 유적과 강원도 천혜의 자연유산을 연계한 탐방루트를 개발하여 제시한 바 있음.('15. 8월 염동열 의원) ○ 문화재 홍보체험관(정자형) 지원 관련 민관협력 사업개발 정책 협의(강원도, '16.12.) **<향후 추진계획>** ○ 올림픽 조직위원회 등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협의하여 오면 적극 협조할 계획임.
45. 백제역사유적지구도 신라왕경 복원과 같이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을 투입하여 제대로 된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중·장기적 종합계획 수립·추진 중('14.12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추진경과】 ○ 백제왕도 핵심유적 정비·복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4.12.22.) ☞ 협약기관 : 문화재청, 전라북도,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준비단 구성 및 발단식('15.3월)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 내 설치(9명:단장 부여소장/ '15.3월~추진단 발족일까지) ○ 백제왕도 핵심유적 정비·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15.7~12월) ○ 기본계획(안) 기관장 보고회('16.3.29/청장, 충남·전북지사 등) ○ 기본계획(안) 검토 문화재위원 합동분과 워크숍('16.6.15일 10명/'16.7.28일 14명)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기본계획(안)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검토('16.10월/조건부 가결) - 기본계획(안) · 사업기간 : 2017년~2038년 · 총사업비 : 14,028억원(국비 10,640억원, 지방비 4,560억원) · 사업내용 : 백제역사유적지구 등 백제왕도 관련 26개 유적 정비·복원 ○ '17년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 국비 215억원 편성 **<향후 추진계획>** ○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복원 사업추진, 기본계획 구체화('17년~)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전담조직 마련(~'17년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46. 반구대암각화 카이네틱댐 실시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행해진 정치적 행정이므로 더 이상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할 것	**<조치사항>** ○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기본계획 수립용역'('16.10월~17.2월, 울산시)에서 관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보존방안 마련 추진 중 **<향후 추진계획>** ○ '17.2월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의에서 문화재 및 수리·수문 전문가 등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예정 ○ '17.2월 문화재위원회 보존방안 안건 상정
47. 반구대 암각화 보존은 수위조절만이 유일한 대안이며 절수형 양변기를 사용하는 것이 환경을 지키면서 사업기간도 짧고 효과적이므로 울산시와 함께 검토할 것	**<조치사항>** ○ '16.10월 '절수 및 빗물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울산시에 검토 요청 - 울산시는 절수 및 빗물 재활용 관련 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효율성 낮다는 의견 회신 **<향후 추진계획>** ○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기본계획 수립용역'('16.10월~17.2월, 울산시)에 '절수 및 빗물 재활용' 관련 전문가 의견 포함 예정
48. 반구대암각화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문체부와 문화재청은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기본계획 수립용역'('16.10월~17.2월, 울산시) 수행중 **<향후 추진계획>** ○ '17.2월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의 관련 국무조정실, 문화재청, 울산시 지속 협의 예정
49. 국정감사 후 상임위 차원에서 반구대 암각화 관련 전문가, 울산시장, 문화재청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것	**<조치사항>** ○ '16.10.19. 국회(손혜원 의원) 일정협의 - 손혜원 의원 주관 반구대암각화 현장방문 예정 의견 제시 **<향후 추진계획>** ○ 일정 구체화 시 국회, 문화재청, 울산시, 전문가 등이 참여한 현장 토론회 지원
50. 국외문화재가 환수된 이후의 관리가 부실하여 85%가 수장고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전년도 환수문화재 현황 조사 (1월~3월) - 전시·연구 등 활용실태 실적 포함 ○ 일본 궁내청 반환 의궤, 환수 국새 등 총 31건 518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완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2017년도 환수문화재 현황 조사 (1월~3월) - 전시·연구 등 활용실태 실적 포함 예정 ○ 환수(예정) 어보 및 프랑스 환수 “고성 옥천사 시왕도 제2초강대왕도” 등 지정조사 실시
51. 대학박물관의 국보·보물 동산문화재 관리가 부실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대학박물관 소장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체계 개선 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마련(‘16.10.12.) **<향후 추진계획>** ○ 협의체 운영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한국대학박물관협회와의 협의 (2017년 상반기 중)
52. 홍천 물걸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선(보물 제542호)의 하대석 한쪽 부분이 2003년 발견되어 춘천박물관에서 보관중이며 나머지 하대석은 외부에 방치되어 훼손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16.10월 문화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16.10월 외부 하대석 조각을 보호각 내부로 이동 조치 완료 ○ ‘17년도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복원 관련 예산 지원 완료 **<향후 추진계획>** ○ ‘17.2~6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복원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 ‘17.7~12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복원
53. 훈민정음해례본 간송본의 앞 두장은 오류가 많으므로 국보지정을 해제하거나 오류 부분 재복원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 훈민정음 해례본 정본 제작 자문회의 개최(‘16.11.23.) - 전적은 문화재이기 이전에 실제 사용했던 실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낙장된 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하거나 접힌 책장의 안쪽 이면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보수 부분의 국보 제외 논의는 불필요함. -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본 제작은 국어학계의 숙원사업이자 현재까지 축적된 연구를 토대로 학계에서 의견 수렴 가능 **<향후 추진계획>** ○ 훈민정음 해례본 정본 제작 연구용역 추진(‘17년 상반기)
54. 정밀실측이 완료되지 않은 석조문화재 및 목조문화재에 대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	**<조치사항>** ○ 정밀실측 추진 관련 협조 요청(‘16.10.12/문화재청→지자체) ○ 2017년도 정밀실측 예산 신청 및 예산 교부(‘16.11월~17.1월) ※ 석조문화재 98건, 목조문화재 1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매년 70건 목표로 2021년 까지 완료 ※ 단,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예산반영 정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5. 첨성대 하단 관상용 잔디가 첨성대 훼손을 가속화시키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첨성대 외에도 석조문화재 주변 잔디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시행 : '16.10.10. ○ 첨성대 주변 잔디정비 요청 : '16.10.26. ○ 첨성대 긴급보수비 교부 : '16.11.28. **<향후 추진계획>** ○ 첨성대 주변 잔디 정비 : 2017년중 시행 ○ 석조문화재 주변 현황 조사 : 2017년 중 시행
56. 삼척 흥전리사지 출토 '청동정병'의 문화재적 지정가치를 검토할 것	**<조치사항>** ○ '청동정병'은 출토 후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문화재 지정 검토('16.12월) **<향후 추진계획>** ○ '청동정병' 국가귀속 조치 ('17.3월) ○ 관련전문가 지정가치 검토 후 문화재 지정 추진 ('17년 상반기)
57. 대구 경상감영의 역사적,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사적 지정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 사적지정을 위한 역사적·학술적 가치검토 후 지정예고 하였음. - 현지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16.10월~12월초) - 문화재위원회 지정가치 검토('16.12.14) - 지정예고('16.12.27~'17.1.26/ 관보, 30일간). **<향후 추진계획>** ○ 문화재위원회 심의('17.2월)를 거쳐 지정여부 확정예정
58. 평창올림픽을 전·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오대산 사고 전시관에 조선왕조실록 진본을 전시할 것	**<조치사항>** ○ 조선왕조실록 진본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은 유물 대여와 관련된 사항 협의 진행 중 **<향후 추진계획>** ○ 월정사 성보박물관 및 국립고궁박물관 관계자와 유물 대여 조건(기간 및 전시 환경) 등에 관한 사항 협의 지속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59.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화재 특별점검 결과에 따른 E, F등급은 보수를 완료하고 D등급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	**<조치사항>** ○ 국가지정문화재는 100% 보수예산지원으로 조치완료 또는 조치중이며,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현재 77%가 예산 지원되어 조치 중임. **<향후 추진계획>** ○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수는 지방비 확보여력으로 제한적이나, 보수 방안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강구하겠음.
60. 문화재 수리에 사용하는 목재는 K-wood 인증을 획득한 목재를 사용할 것	**<향후 추진계획>** ○ 문화재수리 시 인증 목재제품 사용 방안 검토 - 문화재 주변정비 사업 등에는 건조제재목 등 인증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 검토 (현 인증 목재제품 : 건조제재목 13건, 방부목 20건 등) ※ k-wood 인증제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조제재목, 방부목, 목탄 및 목초액, 목재펠릿,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과 같은 목재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품질인증제도(현재는 KS인증으로 통합)
61.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직접 함수율을 측정할 수 있도록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를 확보할 것	**<조치사항>** ○ 관련 내용 지자체 통보('16. 9월) - 문화재수리시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공인기관 등에 함수율 시험 의뢰 및 함수율측정기 사용 수시점검 ○ 휴대용 함수율측정기 구비('16.12월 / 문화재청) **<향후 추진계획>** ○ 문화재수리 현장점검 시(매 분기,년4회/문화재청) 목재 함수율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점검
62. 숭례문 단청 소재 개발과정에 단청장인 및 기술자 등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청 소재 개발 이후 숭례문 재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일정·목표 등)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전통단청소재 연구개발 사업(국립문화재연구소) 과정에서 해당분야 장인 및 기술자 부분 참여 중 - 연구내용 : 단청안료 및 아교 제법 규명 연구 등 - 연구기간 : '14 ~ '20년 **<향후 추진계획>** ○ 단청장인 및 기술자 적극 참여 - 향후에도 시공법 연구 등에 단청 장인, 기술자 참여를 적극 검토 ○ 숭례문 단청 재복구 계획 수립(2017.상반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63. 문화재수리 불법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조치사항>** ○ 문화재수리 현장점검(4회/'16년) - 자격증 대여 및 이중취업, 불법하도급 관련 사항 점검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개정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19.2.4 시행) - 불법하도급 행정처분 기준 강화('17.2.4 시행) ·(신설)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전문문화재수리업자 이외의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 2차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 3차 위반시 영업정지 9개월 ·(신설) 발주자에게 하도급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 3차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신설) 도급받은 감리를 하도급한 경우(1차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 1차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년 / 3차 위반시 영업정지 2년 ·(강화) 하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재하도급한 경우 *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 6개월 **<향후 추진계획>** ○ 문화재수리 현장점검(년 4회)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 정비(지속)
64.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역할을 분명히 하여 민간 문화재 수리업계와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만드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16.2.3개정 / 2017.2.4시행) - 제42조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신설 · 국가 보조사업 문화재수리 중 중요도·난이도가 높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2017. 1. 10개정 / 2017. 2. 4 시행) - 제24조의2(재단의 문화재수리사업)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를 하게 한 경우 **<향후 추진계획>**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17.2월) 후 민간 수리업계와 충돌 최소화를 위한 합의점 모색 검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65. 현재 문화재수리 직종에 대한 노임단가 조사업무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문화재수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노임단가 조사업무를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 노임단가 현실화 관련 업무협의('14.5월/10월, '16.9월) - 조사주관기관 : 대한건설협회 **<향후 추진계획>** ○ 대한건설협회 및 통계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우리 청 산하기관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등에서 향후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66.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수행 및 자문위원회 운영은 정치적 접근이 아닌 전문적인 문화재행정 차원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	**<조치사항>**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문화재위원회 검토와 지자체 협의, 관계 전문가의 자문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 신라왕경 사업 관계 전문가(문화재위원 등) 워크숍 개최 ('16.8.31./10.31.) ○ 이와 관련,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 훈령 제628호, '14.4.28.)>에 따라 - '14년 7월부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자문위원회"구성·운영[2기 자문위원회('16.8.~'18.7월) 고고학·경관·세계유산 등 전문가 17인] **<향후 추진계획>** ○ 신라왕경 사업 자문위원회 운영(반기별 또는 현안에 따라 수시) ○ 복원·정비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및 관계 전문가 자문(수시)
67. 신라왕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발굴조사와 철저한 고증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고 월성발굴조사의 중장기 계획을 보고할 것	**<조치결과>** ○ 경주 월성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발굴조사를 위한 '발굴조사 마스터플랜 수립'('15.6.2.) - 월성 내부 4개 구역과 해자·성벽·성문을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진행 - 관련 학계 및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합리적으로 진행 - 조사계획·성과, 문화재위원회 보고 및 일반 공개 등 ○ 월성 발굴 전문인력 충원(연구관1, 전문직3/ 2015.11월) ○ 경주 월성 발굴조사 추진계획 수립('16.4.19.) - 월성 실체 확인을 위한 단계적 발굴조사 추진 - 신라 궁성 복원을 위한 고증과 기초자료 구축 - 관광교육 자원화를 통한 신라문화 역사정체성 제고 **<향후 추진계획>** ○ 월성 실체 확인' 1단계 발굴조사 진행(~2019년) ○ 월성 실체 규명' 2단계 발굴조사 계획 수립·추진(2020년~) ○ 발굴성과에 대한 역사·고고학적 고증연구 추진(~계속)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68. 신라왕경사업 현장 모니터링 점검자 및「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참여자 선정에 보다 엄격한 자격 요건과 사전검증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신라왕경사업 관련 관계전문가 및 연구용역 참여자 선정 시, 관련 분야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문화재 관련 연구분야의 성실성·제재사항 등 적격·적절성 여부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조치 - 부적격한 현장 모니터링 점검자 2인 해촉('16.10.6.) 및 관계 전문가 추가 위촉('16.10.11.) **<향후 추진계획>** ○ 향후 현장 모니터링 전문가 위촉시 전문성 및 적격성 검증을 철저히 하겠음. ○ 종합기본계획 마련 각 단계마다 많은 내·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해 품질 높은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하겠음.
69.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사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최대한 동원하고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할 것	**<조치사항>**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8개 유적 정비·복원은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연구용역·정비사업 등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진행하고 있음. ○ 또 문화재위원회·신라왕경사업추진단 자문단·각 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종합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 향후에도 복원·정비사업은 문화재위원회와 신라왕경사업추진단 자문위원회, 유관기관 검토회의 등에서 제안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추진하겠음.
70. 경주 월성 마스터플랜 수립시 전문가 및 문화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철저한 고증을 통해 제대로 된 발굴, 복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종합기본계획』 연구용역 중 - 용역기간 : '14.12.3.~'17.6.30. - 주요경과 · 추진현황보고회('15.4.29.) 및 시민설명회(11.23.) 개최 · 지도위원회('15.5.20./5.22.) 및 자문회의(6.25./7.23.) 개최 · 세계유산·활용분야 자문회의('15.10.16.) 개최 · 유관기관 실무협의회(1~25차) 개최(~'16.12월) 개최 · 신라왕경사업 자문위원회 보고('15.7.21./'16.1.26./4.28./9.20.) ·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보고('16.5.11.) · 문화재위원(합동분과) 대상 워크숍 개최('16.8.31./10.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 문화재위원회 재보고('17.9월 예정)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및 사업별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충분한 고증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음.
71.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신라왕경 지구에 대한 발굴 등 개발사업이 유네스코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문화재청이 책임 있게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조치사항>** ○ 신라왕경 정비·복원사업은 세계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물론 등재 당시의 완전성 및 진정성의 수준이 보강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고고학적·역사학적 고증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음. - 신라왕경사업 자문위원회 개최('15.7.21./'16.1.26./4.28./9.20.) - 종합기본계획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보고('16.5.11.) **<향후 추진계획>** ○ 종합기본계획 뿐만이 아니라 개별 사업들도 소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검토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고, 또 세계유산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도록 관련 전문가와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72. 지역문화재 발전 및 활용도 제고와 지역문화의 국민 향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을 확대할 것	**<조치사항>** ○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확대 완료 - 생생문화재사업 : '16년 77건 22.2억원 → '17년 120건 28억원 - 향교·서원활용사업 : '16년 88건 20.7억원 → '17년 87건 28억원 - 문화재야행사업 : '16년 10건 30억원 → '17년 18건 45억원 - 산사문화재활용사업('17년 신규) : '17년 25건 10억원
73. 경복궁 주·야간 CCTV 화질이 41만화소이어서 200만화소의 CCTV와 선명도 차이가 있으므로 좀 더 높은 화소의 CCTV로 교체할 것	**<조치결과>** ○ '08~'10년에 걸쳐 궁·능 CCTV 설치 완료 하였으며, 내용연수(9년)를 고려하여 단계별 신규 CCTV를 교체 추진 중임 ○ '14년~'16년 경복궁, 창경궁 200만 화소로 교체 및 추가 설치 완료(87개소) **<향후 추진계획>** ○ '17년 창경궁, 덕수궁 저화질 CCTV 교체 예산 확보(540백만원) - 41만 화소 CCTV→200만 화소 교체 예정 / 110개소(창경궁 57대, 덕수궁 53대) ○ 연차별 궁능 저화질 CCTV(41만화소) HD급 화질 CCTV(200만화소)로 교체 추진('18~'20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74. 현재 카페로 사용하고 있는 창덕궁 빈청의 복원에 고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복원이 가능하므로 이를 복원할 것	**<조치결과>** ○ 빈청으로 추정되는 기단이 현재 어차고 기단 하부에서 확인되었으나 고증자료 부족으로 빈청 복원은 어려우며, 현재 어차고(19010년경 건립)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 만큼 관람객을 위한 홍보관 및 편의시설로 활용하기로 결정('14.1.8) ○ 어차고 활용 문화재위원회 심의('15.3.11) - 창덕궁 홍보자료 전시 및 전통문화상품 등 편의시설 운영 ○ 어차고 내부공사 완료('15.9.14.) - 홍보관, 관람객 편의시설로 활용('15.9.16.) **<향후 추진계획>** ○ 빈청(어차고) 복원은 빈청터와 주변 지형복원 등을 포함한 충분한 고증자료확보를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
75.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해 종묘 주변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뚜렷한 기준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사적+세계유산)심의(14.7.9.) 조건부 가결 - 종묘에서 바라보이는 건물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최고높이 71.9m (옥탑포함) - 건축물 배치계획, 설계 및 디자인에 대한 내용은 별도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합동분과 위원회에서 재심의 **<향후 추진계획>** ○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보완자료가 제출되면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사적+세계유산)에서 재심의 예정임
76. 조선왕릉 내 다목적 산불방제 차량이 소방 활동 보다는 경내 경상관리와 출장업무로 인한 사용 빈도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차량기능 유지를 위해 정기적 운행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다만, 관내 지역외의 출장 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고자 함 * 산불조심기간 : 봄철(2월~5월), 가을철(11월~12월) **<향후 추진계획>** ○ 장기적으로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의 목적 외 사용빈도를 낮출 수 있도록, 경상관리 전용차량 구입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 나갈 예정임
77. 4대궁에서 개관일에 농약을 살포해 관람객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4대궁을 포함하여 문화재 전반에 걸쳐 농약 살포 현황을 조사하고 휴무일에만 안전 관리를 준수해 농약을 살포하도록 조치할 것	**<조치결과>** ○ 소속기관 농약사용 및 관리 철저 시달('16.9.28) - 농약사용 반드시 휴무일 사용 원칙 - 친환경 약제 선별 및 최소 수량 사용 등 **<향후 추진계획>** ○ 궁·능 담당자 농약 사용요령 및 관리방법 교육 실시('17.3~4월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78. 「문화재청은 화성 태안 3지구의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건설교통부 등과 어떤 협력을 할 것인지와 매장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을 보고할 것	**<조치결과>** ○ 태안 3지구 택지개발은 '04년 12월부터 '16년 1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문화재 심의를 진행하여 '16.12.14 최종 허가를 득한 상태임. ○ 최종 허가 안은 택지개발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매장문화재(정조 초장 관련 유구)가 있는 곳은 택지개발로부터 제외하여 역사공원으로 보존하도록 하였음. **<향후 추진계획>** ○ 허가 안대로 매장문화재가 보존 될 수 있도록 개발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화성시)
79. 국외 독립운동유적지가 905개 있는 바, 국가보훈처 소관이라고 배제하지 말고 국외 독립운동유적지가 문화재보호법상의 국외 문화재 개념에 포함되도록 개정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19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정부안) 제출 : '13.10.25. ○ 국회 소관위원회(교문위) 상정 : '14.4.1. ○ 19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 '16.5.30. ○ 20대 국회 재추진(박경미의원 대표발의) : '16.11.19. **<향후 추진계획>** ○ 국회 입법절차에 따라 조치 예정
80. 명성왕후를 시해한 일본검(히젠도)이 일본 쿠시다 신사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 민간단체에서 환수 후, 파괴 주장 : '10.3월~계속 * 문화재는 보존·보호의 대상이나 일본검(히젠도)은 파괴의 대상이고 국내법 상 문화재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범행도구차원에서 접근 **<향후 추진계획>** ○ 관계부처(외교부) 조치 요청 : '17. 상반기
81. 문정왕후어보가 3년이 지나도록 환수가 지지부진 하므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문화재청,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수사요청 : '13.5.23. ○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어보 압수 : '13.9.27. ○ 문화재청-미국 이민관세청 간 「한미 문화재 환수협력 양해각서」 체결('14.7월) ○ 문화재청, 문정왕후어보 현지실사 : '14.7월 ○ 문화재청 -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협의 : 대면 14회 / 유선 47회 ○ 외교부 - 미국 국무부 협의 : 대면 4회 ○ 미국 LA연방검찰, 민사몰수 소송 제기 : '16.9.19. ○ 미국 캘리포니아주연방법원 궐석재판 개시 : '16.12.30. **<향후 추진계획>** ○ 몰수완료 후, 국내 환수 추진 : '17. 1분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82. 중요민속문화재 174곳 중 10%가 빈집으로 있어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17년 돌봄사업 대상으로 포함하여 통합관리 **<향후 추진계획>** ○ CCTV,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재난예방 - '18년까지 설치 완료 예정('17년 3건, '18년 18건)
83. 통영 소반장 추용호 공방 강제철거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이 직접 나서서 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것	**<조치사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안 제35조제2항 신설) - 입법예고 : '17.1.10.~2.20. * (개정내용) 등록문화재의 직권 등록 및 등록 절차 진행 근거 마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문화재로 보존 및 활용 등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조사 및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향후 추진계획>**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17. 4월 이후 -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 '17. 2월중 -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17. 2~3월중 ○ 통영 소반장 추용호 공방 등록 직권 조사 등 추진 : '17. 5월
84. 「한글 1. 0패키지」 등록문화재 등록 말소 사유와 향후 계획을 제출할 것	**<조치사항>** ○ 「한글 1.0 패키지」 등록문화재 등록('13.8.27) → 등록된 버전은 한글 1.2라는「한글 1.0 패키지」 진위 여부 민원 제기('16.1.14) → 자문회의 및 국가기록원 구동 확인 등 현지 조사 실시('16.2~3월) ○ 문화재위원회 심의('16.5.24) 후 등록 말소('16.6.15) - ㈜한글과 컴퓨터 소장 등록문화재(제564호)는 「한글 1.0 패키지」가 아닌「한글 1.2 패키지」인 것으로 확인되어 말소 **<향후 추진계획>** ○ 향후 문화재 등록 검토 과정을 철저히 하여 유사사례 재발 방지
85. 소실·훼손의 우려가 큰 우리의 근대 문학 서적에 대하여 등록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것	**<조치사항>** ○ 근대문화유산 문학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 실시('09.4~10월) ○ 관계 전문가 현지 조사('10.6월) 및 문화재위원회 검토('10.8월) ○「김소월 시집 진달래꽃」 2종 4점 문화재 등록('11.2월) **<향후 추진계획>** ○ 근대문화유산 문학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등록 조사 실시 ('17.6~9월) 및 등록 검토('17.10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86. 50년이 경과하지 않은 현대문화유산도 등록문화재 개념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예비문화재 제도'를 검토할 것	**<조치사항>** ○ 문화재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발표('17.1.9) -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근·현대문화유산 보호제도 도입 추진(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향후 추진계획>**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17.6월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 '17.12월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17.7~8월 -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17.9~11월
87. 일본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강제징용 사실을 적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	**<조치사항>** ○ 국제회의,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일본의 약속이행 촉구 - '16. 7. 제40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부대행사 "세계유산과 해석, 그 의미와 가치"를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최 - '16. 11. 외교부와 함께 "세계유산의 해석과 미래가치"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향후 추진계획>** ○ '18년도 세계유산위원회까지 외교부, 국제기구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하고 일본의 약속 이행 지속 추진
88.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시행의 법률적 근거가 아직 없으므로 유네스코「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의 취지에 따른 국내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것	**<조치사항>**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16. 11. 7) **<향후 추진계획>** ○ 발의 법안에 세계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소속기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89. 대학원의 교수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문화재청은 대학교가 발전될 수 있도록 대학원 전임교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조치사항>** ○ 대학원 전임교원 현황('17년 1월 현재) - 3개학과 : 정원 14명/현원 5명/ 확보율 36% ※ '13.3월 석사과정(2개 대학원 3개 학과) 개설/ '15.3월 박사과정 개설 **<향후 추진계획>** ○ '17년 상반기까지 총 5명 충원할 계획임 ※ '16년 2명(기존 미충원 인원) / '17년 3명(소요정원 확보 인원) - 5개학과 : 정원 19명/ 현원 10명/ 확보율 53% ※ 교육체제 개편으로 '17년 기준, 당초 3개학과에서 5개학과로 확대 ○ 향후 행정자치부 등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법정교원 확보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국립문화재연구소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90. 증도가자 훼손과 관련하여 유물 조사·분석을 위한 매뉴얼 마련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조치사항>** ○ 유물 보존처리 및 분석 업무 개선 방안 마련 시행('16.11월) - 유물 분석 방법 선정 시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인 진단, 기본계획 수립 및 진행상황 보고 정례화 - 유물취급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유물 상태조사 기록 의무화 및 유물 분석 시 전담팀 구성 등 ○ 유물 취급 매뉴얼 제작('16.12) ○ 유물 보존처리 관련자 교육 실시('16. 5월, 12월) - 문화재 보존처리 및 조사과정에서의 유물취급 요령(연 2회 정기교육 실시) ○ 유물취급 윤리서약서 및 SNS 문자 발송을 통해 경각심 고취('16. 12) **<향후 추진계획>** ○ 유물 보존처리 및 분석 관련 매뉴얼 제작 - 매뉴얼 전 직원 교육 실시 예정('17. 3월) -「보존처리 및 분석 매뉴얼」 보완 제작('17. 상반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91. 부석사 관세음보살좌상의 보관에 문제가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부석사 관세음보살좌상의 안전하고 최적한 보존환경에서 관리를 위해 수장고 온·습도 관리, 유물보관 상태 점검 및 유물 수납시설 보완('16.11~12월) - 수장고 관리책임자 및 유물담당공무원(유기질·무기질 분야) 변경·지정관리 - 유물 재질별 수납시설 신규 확충(5종 9건), 유물 이동시 안전을 위한 무진동운반차 등 구입(3종 3건) - 수장고 유물 재질별 보관방법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부착 등 환경 개선
92. 경주 지진피해 조사 시 첨성대에 직접 사다리를 걸치고 조사한 것은 부적절 하므로 현장조사 실시방법을 개선할 것	**<향후 추진계획>** ○ 첨성대 상부에 대한 정밀조사 시, 조사자의 안전 확보 및 문화재 손상 예방을 고려한 장비를 마련하여 운용 예정
93. 최근 취약한 안전방재 연구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건축문화재안정성 평가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건축문화재 안정성평가 시험연구시설 건립」 문화재청 주요정책과제 선정관리 (성과목표 2-2 예방적 안전관리 지속 확산) ○ 건축문화재 안정성평가 시험연구동 건립 공사 시행('17.1.12 ~ '17. 7.10) **<향후 추진계획>** ○ 안정성 평가를 위한 연구계획 수립 및 원활한 연구 및 시설운영을 위한 예산확보('18~, 연간 3억원) 추진

< 국립고궁박물관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94. 89%이상의 조선왕실 유물이 한번도 전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장고 개방 확대 및 홈페이지 활용 등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수장고 및 보존과학실 대국민 공개행사 - 수장고 및 보존과학실 직접 출입은 소장품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 공개시 소장품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별도의 유물 열람실 확보 후 행사 진행 ○ 박물관 소장품 정보 향유권 확대 - 전국 박물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연계한 소장품 정보공개 (2,000여 건), 소장품 사진 온라인 무료개방(606건) **<향후 추진계획>** ○ 홈페이지 소장품 정보 대국민 서비스 확대 ○ 구글 컬처럴 인스티튜트(Google Cultural Institute)를 통한 소장품 공개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95. 왕실유물 특성상 다양한 재료들을 혼합하여 만들다 보니 다른 유물 복원작업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왕실유물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한 보존복원 실시 - 의궤 등 관련 문헌 조사와 분석장비를 통한 재료·제작방법 확인 진행 - 전통기술·재료 관련 전문가와의 자문 등 협업 실시 **<향후 추진계획>** ○ 보존처리 여건 개선과 전문 인력 확보 추진 예정

< 국립무형유산원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96. 전승공예품의 해외 문화원 대여 후 제대로 관리·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	**<조치사항>** ○ 재외공관 대여 전승공예품 활용관리 실태 현지 점검('16.10월, 12월) - 점검기관(6개 기관) : 뉴욕문화원, 유엔대표부, 워싱턴문화원, LA문화원, 멕시코문화원, 멕시코대사관 - 점검결과 : 활용 미흡 기관 대여 공예품 회수 및 분실·훼손 작품 변상 진행('17.3월 완료 예정) ○ 활용 현황 보고서 점검 항목 강화 - 관리자 지정, 전년도 활용 실적, 공예품 활용률, 미활용 공예품 현황 등 점검 항목 추가 ○ 대여 조건 강화 - 공예품 관리자(담당자) 변경시 무형원 보고 의무 부과 - 최대 대여년수를 1년으로 단축하고 연장 신청 시 활용·관리 실적 심사를 통한 연장 여부 결정 **<향후 추진계획>** ○ 전승공예품 활용 현황 실태 서면 점검('17.2월) ○ 국내 대여 전승공예품 활용 관리실태 현지 점검(수시) ○ 재외 공관 대여 전승공예품 활용 관리실태 현지 점검('17.2월/중국, 4월/헝가리)
97. 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대전·대구·세종에는 실적이 없으므로 지방에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2016년 공개행사 미개최 지역에서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올해의 중점 지역) 행사 지원 - 12회(강원 원주, 충남 태안, 경북 의성, 대전, 충북 진천 등) ○ 굿보러가자 공연으로 지방의 무형문화재 향유기회 증대 - 6회(전남 영광, 전북 완주, 경기 연천, 경남 밀양 등) **<향후 추진계획>** ○ 올해 공개행사 실시 외 지역에서 기획행사 실시 ○ 보유자·전수교육조교 권역별 간담회 실시로 월별, 지역별로 고르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굿보러가자 지자체 공연 개최 (연7회)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 한국문화재재단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98. 미르재단과의 업무협약(한국의집 취선관 내 페랑디-미르 요리학교 운영 관련)은 한국문화재재단의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며, 법인 설립 후 실적이 전무하고, 설립 및 운영취지의 진정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미르재단과의 업무협약 취소를 검토할 것	**<조치사항>** ○ 한국문화재재단과 미르재단 간 업무협약 해지완료('16.10.12.)
99. 한국의집 주요사업에 대한 감사기관의 철저한 감사 및 식음료·공연부문의 지속적인 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향후 추진계획>** ○ 한국의집 주요사업 추진방향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자체감사계획 수립(2월중) - 한국생산성본부와 연계하여 감사계획 수립 * '한국의집 운영 활성화 연구용역' (2015.9.1.~10.31/한국생산성본부) ○ 자체감사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3월~5월)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00.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이후 4년 동안 환수실적이 6건 8점으로 저조하므로 국외재단 임무 중 환수에 보다 중점을 두고, 환수대상 문화재 목록을 정리하여 계획적으로 환수를 추진할 것	**<조치사항>** ○ 환수대상 문화재 자료 수집 및 심층 검토 - 불법·부당 반출 입증자료 수집 - 국외문화재 유통시장 모니터링 강화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자료 수집을 통한 환수대상 문화재 파악·목록정리 - 국외문화재 유통시장 불법문화재 유통모니터링 강화 등 ○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추진을 위한 문화재청, 경찰청, 조계종 등 유관기관 협력체제 강화
101. 원활한 환수 작업을 위해 국외문화재 보존·복원 및 홍보 사업을 적극 활용할 것	**<조치사항>** ○ 국외문화재 보존·복원 및 활용지원 사업 확대('16년 224백만원→'17년도 400백만원) - 문화재청-국외소재문화재재단 활용지원 사업 통합으로 국외문화재 보존처리 등 지원 확대('16년 7건→'17년 10건 이상)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국외문화재 보존·복원 및 활용 지원 공모(2~4월) 실시 - 해외 한국문화재 소장기관 등 대상 보존·복원처리 사업 신청서 접수, 심사를 통한 선정 ○ 한국문화재 보존·복원 국제워크숍 개최(6월/10월 예정) - 현지 소장기관에서 보존처리 지도 및 실습 방식의 워크숍 실시 - 북미권 1회, 유럽권 1회 예정